#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 청 북도 의 회
교 육 위 원 회

\title{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심 사 보 고 서

2012.03.12.(월)

교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충청북도교육감
나. 발의일자 : 2012년 02월 23일
다. 회부일자 : 2012년 02월 24일
라. 상정일자 : 2012년 03월 07일
(제 307 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O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교육국장 이명숙)
가. 제안이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폐안」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도민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원격교습학원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 가입 등을 규정함(안 제2 조제1항)

○ 시행령의 교습과정 분류에 따른 조정과 국토개발, 조경, 카지 노딜러, 도배, 미장, 세탁 등 신규 교습과정의 시설규모 신설 (안 제 2 조의 4 별표 1 , 별표 2 )

○ 지하실의 학원시설사용에 대한 규정 조문 변경(안 제2조의4 $\rightarrow$ 제 2 조의 2 )
$\bigcirc$ 학원시설의 규제조항 삭제(안 제 2 조의 4 제 5 호)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재학생 교습 제한에 따른 예외(방학 중 허용) 문구 삽입(안 제2조의5제1항)
$\bigcirc$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제한규정 삭제(안 제2 조의6)
○ 보습학원의 교습대상을 재학생으로 제한하던 것을 삭제하여 교습 대상 확대(안 제 2 조의 4 제 1 항 별표 1 )

○ 원격교습학원은 그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안 신설(안 제2조의6)
○ 독서실 출입금지(24:00~04:00)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안 제4조제 2항)
○ 교습의 서면 중지명령 조항 삭제(안 제9조의2)
○ 종전의 우수학원 지정•육성을 교습소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10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을 적용하여 조문을 간결하고 알

기 쉽게 정비

##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김왕년)
○ 본 조례 개정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원격교습과 진학상담.지 도를 위한 학원을 등록하도록 조례에 반영하였고,

O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경, 카지노덜러, 도배, 미장, 세탁 등 신 규 교습과정을 반영하였으며,
O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 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보완과 용어 등을 정비하는 등 적절한 개정이라 사료됨

O 다만,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 의견을 수용하여 개정조례안에 반영한 것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첨부서류 :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 다）과 같은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를＂「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로 하고，＂관한＂을＂푈요한＂으 로 한다．

제2조의 제목＂（학원설립•운영자 둥의 책무）＂를＂（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 자 등의 책무）＂로 하고，같은 조 제1항 중＂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4조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 2 조제 1 항제 2 호 중＂경우＂를＂경우에는＂으로 하고，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3．원격교습학원의 설립•운영자의 경우 전자상거래 상 학습자 보호를 위하 여 학습자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가．「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계약

나．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4 조제 10 항에 따

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제2조제2항 중＂수강생에게＂를＂학습자에게＂로 하고，＂보상＂을＂배상＂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학원설립 • 운영자＂를＂학원설립 • 운영자 및 교습자＂로 하고，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하여＂를＂제 12 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4항 중＂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제3항에 따라＂로 하고，＂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 44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0 조에 따라 학원과 교습소 설립 • 운영자는 강사 둥의 직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고 관련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조의2제1항 중＂교육환경 및＂을＂교육환경과＂로 하고，같은 항 제1호를 다 음과 같이 한다．

1．강의실이나 열람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이하＂영＂이라 한다）」제3조의3제1항 별표 2 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 우에는 개별실이나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또한 강의와 실험 • 실습 • 실 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다）

제2조의2제2호 중＂둥을 요하는＂을＂둥이 필요한＂으로 하고，같은 항 제3호 중 ＂학원에 있어서는＂을＂학원의 경우에는＂으로 하며，＂체육시설（체육장）＂을＂체 육장（체육시설）＂로 하고，제6호의＂기타 교습 및＂을＂그 밖에 교습과＂로 한다． 제2조의2제2항제6호의＂기타＂를＂그 밖의＂로 하고，제7호의＂보건위생상＂을 ＂보건위생을 위하여＂로 한다． 제2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지하실은 학원의 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다만，제2조의3젷항부터 제7항

까지의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으 며，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 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3（단위시설의 기준）（1）법 제8조에 따른 단위시설은 제2항에서 제7 항까지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강의실 면적은 30 제곱미터 이상 135 제곱미터（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이하로 하되， 1 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 명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다만，교습의 편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하되，최소 10 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열람실은 45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 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8 명 이하가 되도록 하고，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다만， 남녀별 좌석 구분 또는 이용자의 편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4）실험•실습실은 단위면적이 3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다만，실습의 편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5）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먹는물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6）환기 • 채광 • 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은 별표 $\overline{0}$ 와 같다．
（7）방음시설 및 소방시설은「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관리기준 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 2 조의 4 제 1 항 중＂법 제 8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을＂법 제 8 조에 따른＂으로， 제2항의＂제2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제2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라＂로 하고，제3항의＂제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습• 실기 등을 요하는＂을＂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실험 • 실습 • 실기 등이 필 요한＂으로 하며，같은 항 단서 중＂정하여 있지 아니한 교습과정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신청인이 제출한 설비 및 교구가 당해＂를＂정하지 아니한 교습과정은 교육장이 신청자가 제출한 설비와 교구가 해당＂으로 하며，제4항과 제5항을 삭제한다．

제 2 조의 5 와 제 2 조의 6 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5（1）영 제5조의2제 1 항에 따라 유치원 • 초둥학교 • 중학교 • 고둥학 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습을 제한한다．다만，방학 기간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숙박시설의 위치는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거나 강의실이 속해있는 건물 과 같은 경계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3）숙박시설의 채광시설，조명시설，환기시설 및 냉 • 난방시설은 보건•위 생적으로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소음•진동관리법」어 따른 생활소음관 리기준에 적합한 방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숙박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은 별표3과 같다．
（5）숙박시설에는 소방 관계 법령에서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숙박시설의 화장실 및 급수시설은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화장실은 남•여별로 구분되어야 하고，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7）숙박시설의 급식시설은「식폼위생법」제88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하며，영양사를 1 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8)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1 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남. 여 수강생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1 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제2조의6(원격교습학원의 등록) 원격교습학원은 그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 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 3 조제 1 항 중 "영 제 10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 • 실습 • 실기 둥을 요하 는"을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 1 항의 독서실 이용금지 시간 중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의 동행이나 요 청에 따라 퇴실을 허용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 통보)"를 "(강사 등의 채용과 해임)"으 로 하고, 제 1 항 중 "학원의 설립 • 운영자는 영 제 7 조제 2 항, 제 12 조 및 제 2 조의 5 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5조의 2 제 1 항제 5 호와 제 12 조에 따라"로 하며, "생활 지도담당인력을 채용한 때에는"을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채용하였을 때에는" 으로 하고, "첨부하여"를 "붙여"로, "통보하여야"를 "등록하거나 알려야"로 한 다.

제 7 조제 2 항 중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 통보된"을 "학원에서"로 하고, "생활지도담당인력을 해임한 때에는"을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해임하였을 때 에는"로 하며, "통보하여야"를 "등록하거나 알려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9조 본문 중 "법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 17 조에 따른"으로 하고, "교 육감이 따로"를 "교육규칙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 1 호의 "휴원, 폐원으로 하되 휴원 및"을 "교습정지(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에는 교습의 중지), 등록말소(폐 지)로 하되 교습정지와"로 하고, 제3호의 "상당하다고"를 "많다고"로 한다.

제 9 조의 2 를 삭제한다.
제 10 조의 제목 "우수학원의 지정•육성"을 "우수학원 등의 지정•육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우수학원을 지정 - 육성"을 "우수 학원과 교습소를 지 정하여 지원 - 육성"으로 한다.

제 12 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과 그 밖에"로 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가•등록된 학 원 또는 신고된 교습소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것으로 본다.
(2)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설립 및 변경신청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별표 1]
학원 시설 규모(제2조의 4 제 1 항 관련)

| 종류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시설규모 <br> (강의실실습실 열람실) | 비고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학교교과 } \\ & \text { 교습학원 } \end{aligned}$ | 입시• <br> 검정 <br> 및 보습 | 보통교과 | 입시, 보충학습, 논술 | $\begin{array}{ll} \hline \text { 시지옄 } 90 \mathrm{~m}^{2} \text { 이상 } \\ \text { 군지역 } 60 \mathrm{~m}^{2} \text { 이상 } \end{array}$ |  |
|  |  |  | 기숙학원 | 별표 3과 같음 |  |
|  |  |  | 검정고시 | $90 \mathrm{~m}^{2}$ 이상 |  |
|  |  | 진학지도 | 진학상담 - 지도 | $90 \mathrm{~m}^{2}$ 이상 |  |
|  | 국제화 | 외국어 |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 로 하는 실용 외국어 | $90 \mathrm{~m}^{\text { }}$ 이상 |  |
|  | 예능 | 예능 | 음악, 미술, 무용 | 별표2와 같음 |  |
|  | 독서실 | 독 서 | 유아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 시지역 $120 \mathrm{~m}^{2}$ 이상 <br> 군지역 $60 \mathrm{~m}^{2}$ 이상 |  |
|  | 특수교육 | 특수교육 |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 별표2와 같음 |  |
|  | 7 기 타 | 기 타 | 그 밖의 교습과정 | $60 \mathrm{~m}^{2}$ 이상 |  |
| 평생직업 교육학원 | 직업기술 | 신업기반 <br> 기 술 |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 믹, 전기, 통신, 전자, 항공, 토목, 건 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 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안전관리, 조경 | 불표 2와 같음 |  |
|  |  | 신업응용 기 술 | 디자인 이용•미용, 식음료품(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 노조율 | " |  |
|  |  | 산 업 서비스 |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텔레마케팅, 카지노딜러, 도배, 미장, 세탁 | " |  |
|  |  |  |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 비자전문상담, | $60 \mathrm{~m}^{2} \text { 이상 }$ |  |


| 종류 | 분야 | 계 열 | 교습과정 | 시설규모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 비고 |
| :---: | :---: | :---: | :---: | :---: | :---: |
| 평생직업 <br> 교욱학원 | 직업기술 | $\begin{aligned} & \text { 일 반 } \\ & \text { 서비스 } \end{aligned}$ |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 원, | 불 표22와 같음 |  |
|  |  |  | 병 원코디네이터(coordinator), 청소 | $60 \mathrm{~m}^{3}$ 이상 |  |
|  |  | 컴퓨터 | 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 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 별표 2와 같음 |  |
|  |  | 문화관광 |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character), 관광 | " |  |
|  |  | $\begin{aligned} & \text { 간호보조 } \\ & \text { 기 술 } \end{aligned}$ | 간호조무사 | " |  |
|  |  | 경영•사무 <br> 관리 |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속셈, 속독, 경매 | $60 \mathrm{~m}^{\text {a }}$ 이상 |  |
|  |  |  | 주산 | 별표2와 같음 |  |
|  | 국제화 | 국제 |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 $90 \mathrm{~m}^{2}$ 이상 |  |
|  | 인문 | 인문 |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 $60 \mathrm{~m}^{3}$ 이상 |  |
|  | 사회 | 사회 | 성인고시 | 90 m 이상 |  |
|  | 기 예 | 기 예 |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 예, 만화, 모델, 마술(매직), 실용음악(성 악), 바둑, 공예(종이접기, 꽃꽃이, 꽃기 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무도 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 페라 등) | 별표 2와 같음 |  |
|  |  |  | 웅변, 화술 | $60 \mathrm{~m}^{2}$ 이상 |  |
|  | 독서실 | 독 서 |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 서실 | 시지역 $120 \mathrm{~m}^{2}$ 이상 군지역 $60 \mathrm{~m}^{\text {이잉 }}$ |  |

※ 입시•검정 및 보습분야 보통교과 계열중 보충학습은 보통교과목을(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음악, 미술, 컴퓨터, 무용, 실용외국어회화를 제외한다) 보완 교습하는 교습과정을 말하며, 보충학습 교습과정의 시 설기준 면적 중 충주시, 제천시 지역은 기타지역 시솔규모를 적용함.

## 실험 • 실습 • 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제2조의 4 제 3 항 관련)

| 계 열 | 교습과정 | 시설 - 설비 및 교구 기준 | 비고 |
| :---: | :---: | :---: | :---: |
| 음악 | 1.음악 | 가. 시 설 <br> (1) 음악실: $60 \mathrm{~m}^{2}$ 이상 <br> 나. 설비 및 교구 <br> (1) 공통기준 <br> 가) 감상용전축(채널당 출력 20 W 이상 1 대 이상 <br> (2) 악기과정 <br> 가) 필요한 악기 6 대 이상 <br>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  |
|  | 2.미술 | 가. 시 설 <br> (1) 실습실: $60 \mathrm{~m}^{2}$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br> (1) 정물대 1 개 이상 <br> (2) 화판 및 이젤 일시수용인원 1 명당 1 개 이상 <br> (3) 서양화 과정에 있어서는 석고 및 석고대 10 점 이상 <br> (4) 동양화 과정에 있어서는 벼루, 도포 등 필요한 시설 - 설비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  |
|  | 3.무용 | 가. 시 설 <br> (1) 실습실: $60 \mathrm{~m}^{2}$ 이상 <br> (2) 탈의실: $5 \mathrm{~m}^{2}$ 이상 <br> 나. 설비 및 교구 <br> (1) 전축, 녹음기 각 1 대 이상 <br> (2) 대형거울 <br>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begin{aligned} & \text { 특수 } \\ & \text { 교육 } \end{aligned}$ | 4.특수교육 | 가. 시설 <br> (1) 개별실 $6.6 \mathrm{~m}^{2}$ 이상 또는 집단실 $20 \mathrm{~m}^{2}$ 이상 <br> 나. 교구 <br> (1) 언어치료, 작업치료, 청능훈련, 물리치료, 감각운동, 지각훈 련, 심리행동적응훈련, 보행훈련, 일상생활 훈련 등 치료 교육과정별 필요교구 3종 이상 <br>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begin{aligned} & \text { 산업 } \\ & \text { 기반 } \\ & \text { 기술 } \end{aligned}$ | 1.기계 | 가. 시 설 <br> (1) 설계실: $60 \mathrm{mi}^{2}$ 이상 <br> (2) 실습공장: $60 \mathrm{~m}^{2}$ 이상 |  |


| 계 열 | 교습과정 | 시설 - 설비 및 교구 기준 | 비고 |
| :---: | :---: | :---: | :---: |
|  |  | 나. 설비 및 교구 <br> (1) 선반 2 대 이상 <br> (2) 모터 7마력 이상의 것 1대 이상 <br>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  |
|  | 2.자동차 <br> (2-1,자동차 <br> 정비) | 가. 시 설 <br> (1) 강의실: $30 \mathrm{~m}^{2}$ 이상 <br> (2) 정비실습실: $60 \mathrm{~m}^{2}$ 이상 <br> (3) 기재실: $30 \mathrm{~m}^{2}$ 이상 <br> 나. 설비 및 교구 <br> (1) 작업대 1 대 이상 <br> (2) 디젤기관 1 대 이상 <br> (3) 가솔린기관 1 대 이상 <br> (4) 시험기 및 측정기 2 종 이상 <br> (5) 부대시설 기계 10 종 이상 <br> (6) 일반공구 10 세트 이상 <br>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  |
|  | 2.자동차 (2-2, 중기운 <br> 전) | 가. 시 설 <br> (1) 강의실: $30 \mathrm{~m}^{2}$ 이상 <br> (2) 운전실습장: $990 \mathrm{~m}^{2}$ 이상 <br> (3) 기재실: $16.5 \mathrm{~m}^{2}$ 이상 <br> 나. 설비 및 교구 <br> (1) 중기 가동완전품 1 종 이상 <br> (2) 엔진체 1 대 이상 <br> (3)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1 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  |
|  | 3.금속 <br> (귀금속가공) | 가. 시 설 <br> (1) 실습실: $60 \mathrm{~m}^{2}$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br> (1) 산소용접기 1 대 이상 <br> (2) 마모기 1 대 이상 <br> (3) 광택기 1 대 이상 <br> (4) 모루 일시수용능력인원 2인담 1 대 이상 <br> (5) 압연기(전기로러)1대 이상 <br> (6) 실습대(4인용 기준) 10 대 이상 <br>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계열 | 교습과정 | 시설 - 설비 및 교구 기준 | 비고 |
| :---: | :---: | :---: | :---: |
|  | 4.화공 및 <br> 세라믹 | 가. 시 설 <br> (1) 실습실: $60 \mathrm{~m}^{2}$ 이상 <br> (2) 기재실: $15 \mathrm{~m}^{2}$ 이상 <br> 나. 그 밖에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  |
|  | 5. 전기 | 가. 시 설 <br> (1) 실습실: $60 \mathrm{~m}^{2}$ 이상 <br> (2) 전기실: $30 \mathrm{~m}^{2}$ 이상 <br> 나. 설비 및 교구 <br> (1) 모터 1 마력 이상의 것 2 대 이상 <br> (2) 수전, 송전배전실 <br> (3) 테스타 10 대 이상 <br> (4) 트랜스(변압기) 5대 이상 <br> (5) 실험대 5 대 이상 <br>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 $\begin{aligned} & \hline \text { 6.통신 } \\ & \text { (6-1.유•무 } \\ & \text { 선통신) } \end{aligned}$ | 가. 시 설 <br> (1) 실습실: $60 \mathrm{~m}^{2}$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br> (1) 파일통합장치 1 대 이상 <br> (2) 하드디스크 20 GB 이상 컴퓨터 1 대 이상 <br> (3) 터미널용 컴퓨터 10 대 이상 <br> (4) 국가검정용 프로그램 10개 이상 <br> (5) 업무용 통신 프로그램 2개 이상 <br>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 6.통신 <br> (6-2.유•무 <br> 선설비) | 가. 시 설 <br> (1) 실습실: $60 \mathrm{~m}^{2}$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br> (1) 모뎀 (MODEXI) 1 대 이상 <br> (2) 다중송신장치(IMX) 1 대 이상 <br> (3) 오실로코프 1대 이상 <br> (4) 주파수 발전기 1 대 이상 <br> (5) 회로시험기 5대 이상 <br>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 7.전자 | 가. 시 설 <br> (1) 실습실: $60 \mathrm{~m}^{2}$ 이상 <br> (2) 기재실: $15 \mathrm{~m}^{2}$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  |


| 계열 | 교습과정 | 시설 - 설비 및 교구 기준 | 비고 |
| :---: | :---: | :---: | :---: |
|  |  | (1) 공통기재 <br> 가) 회로시험기 2 명당 1 대 이상 <br> 나) 신호발진기 3대 이상 <br> 다) 트랜지스터체커 1 대 이상 <br> 라) 저주파발전기 2대 이상 <br> 마) 트랜지스터 1대 이상 <br> 바) 시그울레트시 1 대 이상 <br> 사) 정전용량계 1 대 이상 <br> 아) 임피던스브릿쉬 1 대 이상 <br> 자) 조립 및 수리실습에 필요한 공구 30 조 이상 <br> (2) 텔레비전과정 <br> 가) " (1) "호의 공통기재 <br> 나) 텔레비전, 스위프발진기 1 대 이상 <br> 다) 음주선, 오실로스코프 1 대 이상 <br> 라) 고전압계 1 대 이상 <br> (3) 컴퓨터기기과정 <br> 가) " (1) ", " (2) "호의 설비 및 교구 <br> 나) 컴퓨터(전산기기) 5 대 이상 <br> 다) 컴퓨터용 모니터 10 대 이상 <br> 라) 컴퓨터용 프린터 1 대 이상 <br> 마) 보조기억장치 2 대 이상 <br> (4) 비디오과정 <br> 가) " (1)"," (2) "호의 설비 및 교구 <br> 나) VTR 2대 이상 <br> 다) 비디오카메라 2 대 이상 <br> 라) 모니터텔레비전 3 대 이상 <br>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  |
|  | 8.항공 <br> (항공정비) | 가. 시 설 <br> (1) 강의실: $30 \mathrm{~m}^{2}$ 이상 <br> (2) 정비실습실: $60 \mathrm{~m}^{2}$ 이상 <br> (3) 기재실: $30 \mathrm{~m}^{2}$ 이상 <br> 나. 설비 및 교구 <br> (1) 항 공 기 <br> 가) 고정익 1 대 이상 <br> 나) 회전익 1 대 이상 |  |


| 계 열 | 교습과정 | 시설 - 설비 및 교구 기준 | 비고 |
| :---: | :---: | :---: | :---: |
|  |  | (2) 엔 진 <br> 가) 수평대향형 1 대 이상 <br> 나) 수직대향형 1 대 이상 <br> 다) 성형 1대 이상 <br> (3) 제트엔진 <br> 가) Turbo Jet 1 대 이상 <br> 나) Turbo Prop 1대 이상 <br> 다) Turbo Shaft 1대 이상 <br> (4) 시험기 및 측정기 5 종 이상 <br> (5) 일반공구 20 점 이상 <br>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  |
|  | 9.토목,건축 | 가. 시 설 <br> (1) 설계실: $60 \mathrm{~m}^{2}$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br> (1) 제도판 및 제도대 1 명당 1 조 <br> (2) 측량기구 <br>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 $\begin{aligned} & 10 . \text { 의복,섬유 } \\ & (10-1, \text { 양 } \\ & \text { 재 - 한복) } \end{aligned}$ | 가. 시 설 <br> (1) 실습실: $60 \mathrm{~m}^{2}$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br> (1) 더자인 실습대 2 명당 1 대 이상 <br> (2) 재봉기 2 명당 1 대 이상 <br> (3) 전기다리미 2 명당 1 대 이상 <br> (4) 재단대 4 명당 1 대 이상 <br> (5) 전신마네킹 5개 이상 <br>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 $\begin{aligned} & \text { 10.의복,섬유 } \\ & \text { (10-2,수예 } \\ & \cdot \text { 자수) } \end{aligned}$ | 가. 시 설 <br> (1) 실습실: $60 \mathrm{~m}^{2}$ 이상 <br> 나. 설비 및 교구 <br> (1) 재봉기 자수과정 <br> 가) 자수재봉기 1 명당 1 대이상 <br> (2) 수예, 순자수, 인형, 조화과정 <br> 가) 과정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 <br>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  |


| 계 열 | 교습과정 | 시설 - 설비 및 교구 기준 | 비고 |
| :---: | :---: | :---: | :---: |
|  | 11. 광업자원 | 가. 시 설 <br> (1) 실습실: $60 \mathrm{~m}^{2}$ 이상 <br> 나. 설비 및 교구 <br> (1) 채광 및 탐사, 선광실습기기 3종 이상 <br> (2) 화약 및 발퐈작업 구(진동측정기, 발퐈기, 누설 전류측정기 등) <br>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 12.국토개발 | 가. 시설 <br> (1) 실습실: $60 \mathrm{~m}^{2}$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br> (1) 교습과정상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 신설 |
|  | 13. 농림 | 가. 시 설 <br> (1) 실습실: $60 \mathrm{~m}^{2}$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br> (1) 사육과정 <br> 가) 사육장: $300 \mathrm{~m}^{2}$ 이상 <br> 나) 동물 5종 이상 <br> (2) 박제과정 <br> 가) 박제표본(어류, 조류, 갑각류) 5점 이상 <br> 나) 박제 제작기구 1 명당 1 조 이상 <br> (3) 도피피혁과정 <br> 가) 화공약품 처리장 $15 \mathrm{~m}^{2}$ 이상 <br> 나) 회전기, 약품침전탱크전 1대 이상 <br> (4) 임업, 원예 과정에 필요한 교구 <br>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  |
|  | 14. 해양 | 가. 시설 <br> (1) 강의실: $30 \mathrm{~m}^{2}$ 이상 <br> (2) 실습실: $60 \mathrm{~m}^{2}$ 이상 <br> 나. 설비 및 교구 <br> (1) 공통기준 <br> 가) 실습선박 ( $30 \mathrm{G} / \mathrm{T}$ 이상) 1척 이상 <br> 나) 환등기 1 대 이상 <br> (2) 과정별 기준 <br> 가) 갑판과 <br> (1) 정박계선기구(앙카 2 개, 양모기 1 개, 비트 1 개) |  |


| 계 열 | 교습과정 | 시설 - 설비 및 교구 기준 | 비고 |
| :---: | :---: | :---: | :---: |
|  |  | (2) 로프 및 와이어로프 100 m 각 1 개 이상 (3) 나침의 및 청우계 각 1 개 이상 (4) 구명대 1 대 및 소화기구 종별 각 1 개 이상 (3) 수리용 공구 1 식 이상 나) 기관과 (1) 디젤기관(30마력 이상) 1 대 이상 (2) 기관분해 조립용 공구 1 식 이상 (3) 기관수리용 공작기구 1 식 이상 (4) 펌프류(원심력, 기어식) 각 1 대 이상 다. 그 뷲에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  |
|  | 15.에너지 | 가. 시설 <br> (1) 실습실: $60 \mathrm{~m}^{2}$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br> (1) 원자로 계측시설, 열관리방사선 실험기기 1 종 이상 <br>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  |
|  | 16.환경 | 가. 시 설 <br> (1) 강의실: $30 \mathrm{~m}^{2}$ 이상 <br> (2) 실습실: $60 \mathrm{~m}^{2}$ 이상 <br> (3) 기재실: $30 \mathrm{~m}^{2}$ 이상 <br> 나. 설비 및 교구 <br> (1) 대기, 수질과정 <br> 가) 대기 및 수질오염 측정기 2 대 이상 <br> 나) 수질 및 대기환경 분야 실험기기 1 대 이상 <br> (2) 자연환경과정 <br> 가) 생태복원 설계 제도기기 10 대 이상 <br> 나) 생물분류, 토양환경과정 실습에 필요한 기기 1 대 이상 <br> (3)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음진동측정, 폐기물처리 실무에 필 요한 기기 1 대 이상 <br>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  |
|  | 17.공 예 | 가. 시 설 <br> (1) 실습실: $60 \mathrm{~m}^{2}$ 이상 <br> 나. 설비 및 교구 <br> (1) 교습과정상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  |
|  | 18.안전관리 | 가. 시 설 <br> (1) 실습실: $60 \mathrm{~m}^{2}$ 이상 <br> 나.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계열 | 교습과정 | 시설 - 설비 및 교구 기준 | 비고 |
| :---: | :---: | :---: | :---: |
|  | 19.조경 | 가. 시설 <br> (1) 실습실: $60 \mathrm{~m}^{3}$ 이상 <br> 나. 설비 및 교구 <br> (1) 교습과정상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  |
| 산업 <br> 응용 <br> 기술 | 20.디자인 | 가. 시설 <br> (1) 강의실: $30 \mathrm{~m}^{2}$ 이상 <br> (2) 실습실: $60 \mathrm{~m}^{2}$ 이상 나. 과정뼐 설비 및 교구 <br> (1) 인테리어디자인과정 <br> 가) 실습용 컴퓨터 3 대 이상 <br> (2) 그래픽디자인과정 <br> 가) 실습용 컴퓨터 일시수용능력인원 2명당 1 대 이상 <br> (3) 섬유디자인과정 <br> 가) 실습용 컴퓨터 3 대 이상 <br> 나) 복사 조명대 1 대 이상 <br> (4) 디스플레이과정 <br> 가) 실습용 쇼윈도 일시수용능력인원 <br> 나) 쇼윈도용 마네킹 3대 이상 <br> (5) 패션더자인과정 <br> 가) 시청각 기구 1 대 이상 <br> 나) 모터 재봉틀 5 대 이상 <br> 다) 인대(마네킹) 3대 이상 <br> 라) 컴퓨터 2 대 이상 $(\mathrm{CAD})$ 수업시 2 명당 1 대 <br> 마) 컴퓨터 재봉틀 1 대 이상 <br> 바) 오버로크 1 대 이상 <br> 사) 아이언(다리미) 1 대 이상 <br>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  |
|  | $\begin{aligned} & \text { 21. 이용 • 미 } \\ & \frac{8}{8} \end{aligned}$ | 가. 시 설 <br> (1) 실습실: $60 \mathrm{~m}^{2}$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br> (1)헤어과정 <br> 가) 인두(마네킹) 5 개 이상 <br> 나) 건발기(드라이) 5 조 이상 <br> 다) 파마기 2 조 이상 <br> 라) 미안대(거울) 2조 이상 |  |


| 계열 | 교습과정 | 시설 - 설비 및 교구 기준 | 비고 |
| :---: | :---: | :---: | :---: |
|  |  | 마) 샴푸대 1 대 이상 <br> 바) 세면장 및 급수시설 <br> 사) 실습대(4인용) 1대 이상 <br> (2)피부미용과정 <br> 가) 마사지 침대 2 대 이상 <br> 나) 미안대(거울) 5 조 이상 <br> 다) 세면장 및 급수시설 <br> (3)메이크업, 네일아트 과정 <br> 가) 실습대(4인용) 2 대 이상 <br> 나) 메이크업 세트 또는 네일아트 세트 3종 이상 <br>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 $\begin{aligned} & \text { 22. 식음료품 } \\ & \text { (바리 스타, } \\ & \text { 소 믈 리 에 } \\ & \text { 등) } \end{aligned}$ | 가. 시설 <br> (1) 실습실: $60 \mathrm{~m}^{2}$ 이상 나. 세부과정별 교구 <br> (1) 조리 <br> 가) 냉장고(500L이상)1대 이상 <br> 나) 오븐기 1 대 이상 <br> 다) 급수시설 <br> (2) 제과 • 제빵 <br> 가) 빵슬라이서 1 대 이상 <br> 나) 수직형 믹서(중형) 5 대 이상 <br> 다) 오븐 (용량: 2장) 3 대 이상 <br> 라) 발효실(용량 : 40장) 1 대 이상 <br> 마) 냉장고(500L이상)1대 이상 <br> 바) 급수시설 <br> (3) 조주, 와인(소믈리에) <br> 가) 진열대 1 대 이상 <br> 나) 조주대 1 대 이상 <br> (4) 커피(바리스타) <br> 가) 커피머신 1 대 이상 <br> 나) 커피그라인더 1 대 이상 <br> 다) 로스터(로스팅머신) 1대 이상 <br> 다. 그 밖에 과정뼐로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 23.포장 | 가. 시설 <br> (1) 실습실: $60 \mathrm{~m}^{2}$ 이상 |  |


| 계 열 | 교습과정 | 시설 - 설비 및 교구 기준 | 비고 |
| :---: | :---: | :---: | :---: |
|  |  | 나. 설비 및 교구 <br> (1)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  |
|  | 24. 인쇄 | 가. 시 설 <br> (1) 실습실: $60 \mathrm{~m}^{2}$ 이상 <br> 나. 설비 및 교구 <br> (1) 인쇄기 1 종 이상 <br> (2) 제판장비 1 대 이상 <br>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 25.사진 | 가. 시 설 <br> (1) 실습실: $60 \mathrm{~m}^{2}$ 이상 <br> (2) 암실: $5 \mathrm{~m}^{2}$ 이상 <br> 나. 설비 및 교구 <br> (1) 사진기 2 종 이상 <br> (2) 확대기 1 대 이상 <br>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 26. 피이노조율 | 가. 시 설 <br> (1) 실습실: $60 \mathrm{~m}^{2}$ 이상 <br> 나. 설비 및 교구 <br> (1) 정음작업대 1 대 이상 <br> (2) 조율튜너, 튜링햄머 각 1 대 이상 <br> (3) 스테이샤, 스프운밴다, 건반고르기자, 다이얼 게이지 각 1 대 이상 <br> (4) 피아노 1 대 이상 <br>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begin{aligned} & \text { 산업 } \\ & \text { 서비슨 } \end{aligned}$ | 27.속기 | 가. 시 설 <br> (1) 실습실: $60 \mathrm{~m}^{2}$ 이상 <br> 나. 설비 및 교구 <br> (1) 속기용 사무기기 또는 컴퓨터 1 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 28.전산회계 | 가. 시 설 <br> (1) 실습실: $60 \mathrm{~m}^{2}$ 이상 <br> 나. 설비 맃 교구 <br> (1) 전산회계용 사무기기 또는 컴퓨터 1 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  |
|  | 29. 전자상거래 | 가. 시 설 <br> (1) 실습실: $60 \mathrm{~m}^{2}$ 이상 |  |


| 계 열 | 교습과정 | 시설 - 설비 및 교구 기준 | 비고 |
| :---: | :---: | :---: | :---: |
|  |  | 나. 설비 및 교구 <br> (1) 전자상거래용 사무기기 또는 컴퓨터 1 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  |
|  | 30. 텔레마케팅 | 가. 시 설 <br> (1) 실습실: $60 \mathrm{~m}^{2}$ 이상 <br> 나. 설비 및 교구 <br> (1) 텔레마케팅용 사무기기 또는 컴퓨터 1 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  |
|  | 31.키지노딜러 | 가. 시설 <br> (1) 실습실: $60 \mathrm{~m}^{2}$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br> (1)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  |
|  | 32.도배 | 가. 시설 <br> (1) 실습실: $60 \mathrm{~m}^{2}$ 이상 <br> 나. 설비 및 교구 <br> (1)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  |
|  | 33. 미장 | 가. 시설 <br> (1) 실습실: $60 \mathrm{~m}^{2}$ 이상 <br> 나. 설비 및 교구 <br> (1)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  |
|  | 34. 세탁 | 가. 시설 <br> (1) 실습실: $60 \mathrm{~m}^{2}$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br> (1) 드라이크리닝기계 1 대 이상 <br> (2) 회수건조기 1 대 이상 <br> (3) 물세탁기 1 대 이상 <br> (4) 스팀다리미 1 대 이상 <br>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일반서비스 | 35. 애견미용 | 가. 시 설 <br> (1) 실습실: $60 \mathrm{~m}^{2}$ 이상 <br> 나. 설비 및 교구 <br> (1) 애견 미용 전용 1 인용 테이블 1 대 이상 <br> (2) 욕조 1 대 이상 <br>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  |
|  | 36.장의 | 가. 시 설 (1) 실습실: $60 \mathrm{~m}^{3}$ 이상 |  |


| 계열 | 교습과정 | 시설 - 설비 및 교구 기준 | 비고 |
| :---: | :---: | :---: | :---: |
|  |  | 나. 설비 및 교구 <br> (1) 염습대 1 대 이상 <br> (2) 수의(남,여 구분) 1 세트 이상 <br> (3) 관 1 대 이상 <br> (4) 실습용 마네킹 1 개 이상 <br>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 37.호스피스 | 가. 시 설 <br> (1) 실습실: $60 \mathrm{~m}^{2}$ 이상 <br> 나. 설비 및 교구 <br> (1) 침 대 1 조 이상 <br> (2) 휠체어 1 대 이상 <br>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  |
|  | 38.항공승무원 | 가. 시 설 <br> (1) 실습실: $60 \mathrm{~m}^{2}$ 이상 <br> 나. 설비 및 교구 <br> (1) 기내모형: 실습실 내부에 항공기의 내부모형을 $15 \mathrm{~m}^{2}$ 이상 설치 <br>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  |
| 컴퓨터 | 39.컴퓨터(정 보처리, <br> 통신기기, <br> 인터넷, <br> 소프트웨어 등) | 가. 시 설 <br> (1) 실습실: $60 \mathrm{~m}^{2}$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br> (1) 컴퓨터 1 대 이상 <br>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  |
|  | 40. 게임 | 가. 시 설 <br> (1) 실습실: $60 \mathrm{~m}^{2}$ 이상 <br> 나. 설비 및 교구 <br> (1) 컴퓨터 1 명당 1 대 <br> (2) 프로그램 6종 이상 <br>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  |
|  | 41.로봇 | 가. 시 설 <br> (1) 실습실: $60 \mathrm{~m}^{2}$ 이상 <br> 나. 설비 및 교구 <br> (1) 실습용 탁자 2대 이상 <br>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  |
| 문화 <br> 관광 | 42.출판 | 가. 시설 <br> (1) 실습실: $60 \mathrm{mi}^{2}$ 이상 |  |


| 계 열 | 교습과정 | 시설 - 설비 및 교구 기준 | 비고 |
| :---: | :---: | :---: | :---: |
|  |  | 나. 출판에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  |
|  | 43. 영상.음반 | 가. 시 설 <br> (1) 강의실: $30 \mathrm{~m}^{2}$ 이상 <br> (2) 실습실: $60 \mathrm{~m}^{2}$ 이상 <br> (3) 녹음실 및 기재실 $20 \mathrm{~m}^{3}$ 이상 <br> 나. 설비 및 교구 <br> (1) 베타믹스용 VTR 5 대 이상 <br> (2) VHS용 VTR 5대 이상 <br> (3) U-메타 VTR 5 대 이상 <br> (4) VTR 카메라 10 종 이상 <br> (5) 8 mm 릴테프 등 5 종 이상 <br> (6) TV 수상기 10 대 이상 <br> (7) 조명기구 10 종 이상 <br> (8) 간이편집기 자막기 3 종 이상 <br> (9) 오더오, 더빙용 오디오Set 5종 이상 <br>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 44. 영화 | 가. 시설 <br> (1) 실습실: $60 \mathrm{~m}^{2}$ 이상 나. 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 <br> (1) 영화기술과정 <br> 가) 현상실: $10 \mathrm{~m}^{2}$ 이상 <br> 나) 녹음실: $15 \mathrm{~m}^{2}$ 이상 <br> 다) 촬영기 및 영사기 각 1 대 이상 <br> (2) 모델, 무대예술, 배우과정, 무대장치, 조명장치, 녹음장치, 확성장치 1 조 이상 <br>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  |
|  | 45. 방송 | 가. 공통 시설 <br> (1) 강의실: $30 \mathrm{~m}^{2}$ 이상 <br> 나. 기본 시설•설비 및 교구 <br> (1) 부조정실 <br> 가) 기재실: $45 \mathrm{~m}^{2}$ 이상 <br> 나) 설비 및 교구 <br> (1) 영상조정기(VIDEO MIXERUNIT) 1대 <br> (2) 음향조정기(AUDIO MIXERUNIT) 1대 <br> (3) 동기신호발생기(SYNCGEXE RATOR) 1대 |  |


| 계열 | 교습과정 | 시설 - 설비 및 교구 기준 | 비고 |
| :---: | :---: | :---: | :---: |
|  |  | (4) 파형감시기(WAVEFORM MOXITOR) 1대 <br> (5) 방송용녹음기(TAPE RECORDER) 1 대 이상 <br> 6 영상위상감시기(VECTORSCOPE) 1대 <br> (7) 고화질녹화기(S.VHS) 1대 이상 <br> (8) 영상 및 음향감시기(VIDEO \& AUDIO MONITOR) 8대 이상 <br> (9) 편집기(EDITOR) 1:1 또는 2:2 1 대 <br> (2) 스튜디오 <br> (가) 기재실: $30 \mathrm{~m}^{\text {이상 }}$ <br> (나) 설비 및 교구 <br> (1) 베타캄 고화질 카메라 (BETACAMCAMERA) 또는 고화질카메라 (S.VHS CAIERA) 2대 이상 <br> (2) 조명기기(LIGHT, 1 KW 이상) 5 대 이상 <br> (3) 영상 및 음향감시기(VIDEO \& AUDIO MOXITOR) 1대 이상 <br> (3) 방송실습제작실 <br> (가) 편집실 <br> (1) 기재실: $30 \mathrm{~m}^{2}$ 이상 <br> (2) 설비 및 교구 <br> (가) 방송용 영상조정기(SWITCHER) 1대 <br> 사.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COXSOL) 1대 <br> 닥 방송용 녹화기(S.VHS 또는 BETACAV) 1:1 2대 이 상 <br> 랑) 방송용 영상보정기 (LLEPROCESSOR) 1 대 이 상 <br> (ㅁ) 방송용 색상보정기 (COLORCORRECTOR) 1대 이상 <br> (日i) 방송용 영상감시기(VIDEO MONITOR) 1대 이상 <br> (나) 녹음실 <br> (1) 기재실: $30 \mathrm{~m}^{2}$ 이상 <br> 还녹음조정실: $30 \mathrm{~m}^{2}$ 이상 <br> 사녹음 스튜디오: $30 \mathrm{~m}^{2}$ 이상 <br> (2) 설비 및 교구 <br> 아)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MIXER UNIT) 1대 <br> 사 방송용 녹음기(REEL DECK)1대 이상 |  |


| 계 열 | 교습과정 | 시설 - 설비 및 교구 기준 | 비고 |
| :---: | :---: | :---: | :---: |
|  |  | (다) 방송용 녹화기(VTR) 1대 이상 <br> (e) 방송용 반향발생기 $(\mathrm{ECHO})$ 1대 이상 <br> (마) 방송용 음향증폭기(P.A.AIP) 1 대 이상 <br> (1). 필름편집기(FILM EDITOR) 1 대 <br> 삿 방송용 향감청기(SPEAKER) 2 대 이상 <br> 아) 영상음반기(COVIPUTERDISKELECTRICGRAPHIC) <br> 1대 <br> 삿 MILTI TRACK RECORDER 1대 <br> 착 CASSETTE DECK 1대 <br> (队) COMPACK DISK 1대 <br> (€) 방송용음반작동기(TUR\TABLE) 1 대 <br> (다) 야외녹화장비 <br> (1) 방송용 취재용 촬영기 (E\GCAㄱIERA) 3대 이상 <br> (2) 방송용 전기용 조명기(LIGHT) 5대 이상 <br> (3) 방송용 건전기조명기(SUNGUN) 1대 이상 다. 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 <br> (1) 종합과정 <br> 가) "가"목의 공통시설 <br> 나) "나"목중 (3)의 (나)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단, 유선방송인 경우에는 "다"목(11)의 시설•설비 및 교구 를 갖추어야함 <br>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br> (2) 방송제작과정. <br> 가) "가"목의 공통시설 <br> 나) "나"목중 (3)의 (나)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br> (3) 방송기술과정. <br> 가) "가"목의 공통시설 <br> 나) "나"목중 (3)의 (나)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br> (4) 아나운싱 - 리포터과정. <br> 가) "가"목의 공통시설 <br> 나) "나"목중 (3)의 (가)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br> (5) 무대미술(무대분장 포함)과정. |  |


| 계열 | 교습과정 | 시설 - 설비 및 교구 기준 | 비고 |
| :---: | :---: | :---: | :---: |
|  |  | 가)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 및 교구 제외 <br> 나) 실습실: $90 \mathrm{~m}^{2}$ 이상 <br>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br> (6) 편집과정 <br> 가) "가"목의 공통시설 <br> 나) "나"목(1) 및 (3)의 (가)의 시설•설비 및 교구 <br>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br> (7) 촬영 - 영상과정 <br> 가) "가"목의 공통시설 <br> 나) "나"목(1).(2) 및 (3)의 (다)의 시설•설비 및 교구 <br>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br> (8) 조명과정 <br> 가) "가"목의 공통시설 <br> 나) "나"목(1).(2) 및 (3)의 (다)의 시설•설비 및 교구 <br>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br> (9) 음향과정 <br> 가) "가"목의 공통시설 <br> 나) "나"목(1).(2) 및 (3)의 (나)의 시설•설비 및 교구 <br>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br> (10) 성우과정 <br> 가) "가"목의 공통시설 <br> 나) "나"목 (3)의 (나)의 시설•설비 및 교구 <br>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br> (11) 유선방송전송기술과정 <br> 가) 시설 <br> (1)가"목의 공통 시설 <br> (2)기재실: $60 \mathrm{~m}^{2}$ 이상 <br> 나) 설비 및 교구 <br> (1)영상 및 음향복조기(DEXIODULATOR) 각3대 이상 <br> 나) 설비 및 교구 <br> (1) 영상 및 음향복조기(DE\IODULATOR) 각3대 이상 (2) 영상 및 음향변조기(MODULATOR) 각3대 이상 <br> (3) 튜너(CONLIUNITY SATELLITE, ROADCASTLNG SATELLITE) 각1대 <br> (4) 복호기(DECORDER) 1 대 이상 |  |


| 계열 | 교습과정 | 시설 - 설비 및 교구 기준 | 비고 |
| :---: | :---: | :---: | :---: |
|  |  | (3) 영상분배기(VIDEO DIVIDERAMIP) 1대 <br> (6) 음향분배기(AUDIOO DIVIDERAMP) 1대 <br> (7) 칼라화면발생기(PATTER\GGEXE RATOR) 1대 <br> 8. 주퐈수대변환기(SCRAMBLER) 1대 <br> (9) 레벨메터(신호측정기) 2 대 이상 <br> (10) 채널혼합기 1대 <br> (11) 채널변환기( 8 CH 이상) 1 대 <br> (12) 가입자수신기(CONVERTER) 3 대 이상 <br> (13) 파형감시기(WAVEFORM MOXITOR) 1 대 <br> (4) 영상위상감시기(VECTOR SCOPE) 1 대 <br>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 46. 관광 | 가. 시 설 <br> (1) 실습실: $60 \mathrm{~m}^{2}$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br> (1) 관광도서 30 종 이상 <br> (2) 한국지도 (50만분의 1), 세계지도 <br> (3) 고적, 명승지, 안내도 반별 각 1 매 <br> (4) 녹음기, 환둥기, 카메라 반당 각 1 대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  |
|  | 47.캐릭터 | 가. 시설 <br> (1) 실습실: $60 \mathrm{~m}^{2}$ 이상 <br> 나. 캐릭터 과정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간호 <br> 보조 <br> 기술 | 48.간호조무사 | 가. 시 설 <br> (1) 강의실: $30 \mathrm{~m}^{2}$ 이상 <br> (2) 실습실: $60 \mathrm{~m}^{2}$ 이상 <br> 나. 설비 및 교구 <br> (1) 침대 대인용 2 개 이상, 소인용 1 개 이상 <br> (2) 인체모형 1 개 이상 <br> (3) 인체해부 및 생리괘도 각 1 부 이상 <br> (4) 시력 및 색맹표 각 1 부 이상 <br> (5) 신장 및 체중계 각 1 개 이상 <br> (6) 주사기 20 종 이상 <br> (7) 소독기 중형 1 개 이상 <br> (8) 혈압계, 청진기 각 1 개 이상 <br> (9) 흡입기(Suction) 1 개 이상 |  |


| 계 열 | 교습과정 | 시설 - 설비 및 교구 기준 | 비고 |
| :---: | :---: | :---: | :---: |
|  |  | (10) 횔체어 1 개 이상 <br> (11) 주사실습용 인체모형 1 종 이상 <br> (12) 인공배뇨세트 1종 이상 <br> (13) 기관절개관(Cannula Kit) 1종 이상 <br>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  |
| 경영 <br> 사무 <br> 관리 | 49.주산 | 가. 시 설 <br> (1) 실습실: $60 \mathrm{~m}^{2}$ 이상 <br> 나. 설비 및 교구 <br> (1) 대형주판 2 개 이상 <br> (2) 속도촉정 초시계 2 개 이상 <br>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  |
| 기 예 | 50. 국악 | 가. 시 설 <br> (1) 실습실: $60 \mathrm{~m}^{2}$ 이상 <br> 나. 설비 및 교구 <br> (1) 감상용 전축(채널당 출력 20 W 이상) <br> (2) 주요 실습용 악기 5 대 이상 <br>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  |
|  | 51. 무용 <br> (전 통무용,현 대무용) | 가. 시 설 <br> (1) 무용실: $60 \mathrm{~m}^{2}$ 이상 <br> (2) 탈의실: $5 \mathrm{~m}^{2}$ 이상 <br> 나. 설비 및 교구 <br> (1) 전축, 녹음기 1 대 이상 <br> (2) 대형거울 <br>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  |
|  | 32.서예 | 가. 시 설 <br> (1) 실습실: $60 \mathrm{~m}^{2}$ 이상 <br> 나. 설비 및 교구 <br> (1) 벼루 1 명당 1 대, 먹가는 도구 1 명당 1 대 이상 <br> (2) 서법도서 10 종 이상 <br>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  |
|  | 53. 만화 | 가. 시 설 <br> (1) 실습실: $60 \mathrm{~m}^{2}$ 이상 <br> 나. 설비 및 교구 <br> (1) 라이트 박스 1 명당 1 조 <br>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  |
|  | 54.모델 | 가. 시 설 |  |


| 계열 | 교습과정 | 시설 - 설비 및 교구 기준 | 비고 |
| :---: | :---: | :---: | :---: |
|  |  | (1) 실습실: $60 \mathrm{~m}^{2}$ 이상 <br> 나. 모델과정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 55.마술매 직) | 가. 시 설 <br> (1) 실습실: $60 \mathrm{~m}^{2}$ 이상 <br> 나. 설비 및 교구 <br> (1) 대형거울 <br> (2) 오디오(20W 이상) 1 대 이상 <br> (3) 마술도구 50 점 이상 <br>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상)1대 이상 |  |
|  | 36. 실용음악 (성악) | 가. 시 설 <br> (1) 실습실: $60 \mathrm{~m}^{2}$ 이상 <br> 나. 설비 및 교구 <br> (1) 오디오 ( 100 W 이상) 1 대 이상 <br> (2) 미디프로세서(반주기) 1 대 이상 <br>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 57. 바둑 | 가. 시 설 <br> (1) 실습실: $60 \mathrm{~m}^{2}$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br> (1) 바둑판 10 조 이상 <br> (2) 바둑해설퐌 1 조 이상 <br>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 58. 공예 <br> (종이접기,꽃 <br> 기예, 꽃꽂이) | 가. 시 설 <br> (1) 실습실: $60 \mathrm{~m}^{2}$ 이상 <br> 나. 공예 교습과정상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  |
|  | 59.도예 | 가. 시 설 <br> (1) 실습실: $60 \mathrm{~m}^{2}$ 이상 <br> 나. 도예 교습과정상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  |
|  | 60.미술 | 가. 시 설 <br> (1) 실습실 : $60 \mathrm{~m}^{2}$ 이상 <br> 나. 미술 교습과정상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 61.댄스 | 가. 시 설 <br> (1) 실습실: $60 \mathrm{~m}^{2}$ 이상 <br> 나. 댄스 교습과정상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 62. 연기 | 가. 시설 |  |


| 계 열 | 교습과정 | 시설 - 설비 및 교구 기준 | 비고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연 극, 뮤지 } \\ & \text { 컬 , 오 페 라 } \\ & \text { 등), 모델 } \end{aligned}$ | (1) 실습실: $60 \mathrm{~m}^{2}$ 이상 <br> 나. 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 <br> (1) 연기과점 <br> 가) 무대장치 <br> 나) 음향기기 <br> 다) 조명장치 <br> (2) 모델과정 <br> 가) 무대장치 <br> 나) 조명장치 <br>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독서실 | 63.독서실 | 가. 시 설 <br> (1) 열람실: 시지역 $-120 \mathrm{~m}^{2}$ 이상, 군지역 $-60 \mathrm{~m}^{2}$ 이상 나. 설 비 <br> (1) 열람대 일시수용능력 1 명당 1 대 <br> (2) 남 - 여 공용인 독서실은 열람실을 남 - 여 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구 분 | 시설 - 설비 기준 |  |
| :---: | :---: | :---: |
| 강의실 등 | 가. 강의 실: $210 \mathrm{~m}^{2}$ 이상 <br> 나. 보건실: 33 m 이상 <br> 다. 휴게실: $66 \mathrm{~m}^{2}$ 이상 (남, 여 별로 구분 가능) <br> 마. 체육시설(혹은 체육장): 100 m 이상 <br> (단 외부 체육장은 학원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00 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함) |  |
| 기숙사 | 가. 시설 <br> 1) 기숙사 면적 (안쪽의 면적): 수용예정인원 $\times 4 \mathrm{~m}^{2}$ 이상이며, 2 층 침대 사용 시 $2.5 \mathrm{~m}^{2}$ [단, 개별 숙소에 세면실 또는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5 \mathrm{~m}^{2}$ ㅇ 상이며, 2 층 침대 사용 시 $3 \mathrm{~m}^{2}$ ] <br> 2) 공동 세면실 또는 샤워실 <br> - 개별 숙소에 세면실 또는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수용예 정인원 $\mathrm{X} 0.4 \mathrm{~m}^{2}$ 이상(남, 여 구분) <br> 3) 세탁실 1실(남 - 여 구분) <br> 나. 설비 <br> 1) 세탁기(수용예정인원을 고려한 수량) <br> 2) 사물함 (옷장) 1 인당 1 개 <br> 3) 급수시설 (수용예정인원을 고려한 수량) <br> 4) 그 밖에 필요한 시설 • 설비 |  |
| 급식시설 | $\begin{aligned} & \text { 가. 조리실 } \\ & \text { 1) 면적 } \end{aligned}$ |  |
|  | 급식학생수 | 면 적 |
|  | 50 명 이하 51명~100명 101명~150명 151명~200명 201명~250명 251명 ~300명 301명~600명 601명 ~900명 901명~1,200명 1,201명~1,500명 1.501명이상 | $\begin{aligned} & 14 \mathrm{~m}^{2} \\ & 14 \mathrm{~m}^{2}+0.14 \mathrm{~m}^{2} \times(\text { 급식 학 생수 }-50) \\ & 21 \mathrm{~m}^{3}+0.14 \mathrm{~m}^{2} \times(\text { 급식 학 생수 }-100) \\ & 28 \mathrm{~m}^{3}+0.14 \mathrm{~m}^{2} \times(\text { 급식 학 생 수 }-150) \\ & 35 \mathrm{~m}^{2}+0.14 \mathrm{~m}^{2} \times(\text { 급식 학 생 수 }-200) \\ & 42 \mathrm{~m}^{2}+0.14 \mathrm{~m}^{2} \times(\text { 급식 학 생 수 }-250) \\ & 49 \mathrm{~m}^{2}+0.05 \mathrm{~m}^{2} \times(\text { 급식 학 생 수 }-300) \\ & 64 \mathrm{~m}^{3}+0.04 \mathrm{~m}^{2} \times(\text { 급식 학 생 수 }-600) \\ & 76 \mathrm{~m}^{2}+0.04 \mathrm{~m}^{2} \times(\text { 급식 학 수 }-900) \\ & 88 \mathrm{~m}^{2}+0.04 \mathrm{~m}^{2} \times(\text { 급식 학 생수 }-1,200) \\ & 100 \mathrm{~m}^{3}+0.02 \mathrm{~m}^{2} \times(\text { 급식 학 생 수 }-1.500) \end{aligned}$ |


| 구 분 | 시설 • 설비 기준 |  |
| :---: | :---: | :---: |
|  | 2) 시설 - 설비 기준 |  |
|  | 구 분 | 기 준 |
|  | 1. 배수설비 청소 | 청소하기에 쉽도록 적당한 위치에 상당한 크기의 맨홀 및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2. 가열설비 매연 | 매연•검댕 등의 발생으로 조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화재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3. 환기•조명설비 $\begin{aligned} & \text { 위생 } \\ & \text { 그, }\end{aligned}$ | 위생상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환기시설과 채광시설을 하 고, 조명은 300 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4. 세척설비식품 <br> 조리 <br> 한다 | 식품•식기류를 씻을 수 있는 위생적인 세척설비와 조리종사자 전용의 위생적인 손씻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  | 5. 방충방서 등 설비창문 <br> 한 <br> 용기 | 창문 및 출입구등에는 벌레 및 줘를 막을 수 있는 적절 한 설비를 갖추고, 충분한 크기의 덮개가 있는 폐기물 용기를 두어야 한다 |
|  | 6. 그 밖의 시설,설비 배 선 | 배선대등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  | 3) 기구기준 |  |
|  | 품목 | 비고 |
|  | 1. 개수대 | 조리용과 후처리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
|  | 2. 조리작업대 | 높이 80 cm 에서 90 cm 로서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 기의 것으로 한다. |
|  | 3. 냉장고 |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
|  | 4. 식기보관장 |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
|  | 5. 조리용구보관장 |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
|  | 6. 제반기 또는 밥솥 |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
|  | 7. 국솥 |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
|  | 8. 조리용구 | 적정수량의 조리에 필요한 각종 용구를 갖춘다. |
|  | 9. 저울 | 권장사항 ( $100 \mathrm{~kg} \cdot 10 \mathrm{~kg}$ 및 1 kg 용 각 1 대) |
|  | 10. 계량컵 | 권장사항 (1개 이상) |
|  | $\begin{aligned} & \text { 11. 조리실용 시계 • 조리용 } \\ & \text { 온도계 및 온•습도계 } \end{aligned}$ | 권장사항(각 1개) |



## [별표 4]

##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2조의3제5항 관련)

1.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수강생들이 쉽고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 할 것
2.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상 • 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 염 둥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한 다)
3. 출입구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 할 것
4. 대변기의 칸막이 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5. 화장실 안에는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 등을 갖출 것
6. 화장실은 항상 청결히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 환기•채광 • 조명 - 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br> 설치기준(제2조의3제6항 관련)

1. 환기

가. 환기의 조절기준 : 환기용 창 둥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 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충분한 환기량이 유입되거나 배출되도록 할 것 나. 학원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할 것
다.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설치할 겸우 환기닥트는 공기를 오염시키 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 것
2. 채광 (자연조명)

가. 직사광선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천공광에 의한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 조도와의 비가 평균 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퍼센트 미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대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교실 바깥의 반사체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3. 조도 (인공조명)

가. 강의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 룩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최대 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대 1 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4. 실내온도 및 습도

가. 실내온도는 섭씨 18 도 이상 28 도 이하로 하되, 난방온도는 섭씨 18 도 이상 20 도 이하, 냉방온도는 셥씨 26 도 이상 28 도 이하로 할 것

나. 비교습도는 30 퍼센트 이상 80 퍼센트 이하로 할 것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헹 | 개 정 안 |
| :---: | :---: |
| 제1조（목 적）이 조례는 「학원의 설 | 제1조（목적） <br>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br> 필요한 <br> 제2조（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등의 책무）（1）「학원의 설립•운 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하＂법＂이라 한다）제4조제3항에 따라 $\qquad$ <br> 1．（현행과 같음） <br> 2. $\qquad$ 겸우에는 <br> 3．원격교습학원의 설립－운영자의 겸우 전자상거래 상 학습자 보호 를 위하여 학습자별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br> 가．「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계약 <br> 나．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을 <br> 확보하기 위한「금융위원회의 설 |
| 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  |
| 률」（이하＂법＂이라 한다）과 같은 |  |
|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  |
| 어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  |
| 제2조（학 원 설 립－우 영자 등의 책 |  |
| 무）（1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 |  |
| 한 학원 ．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  |
| 공제사업에의 가입은 다음 각 호 |  |
| 의 기준어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 |  |
| 1．（생 락） |  |
| 2．1사고당 배상금 액 10억 원 이상 |  |
| ＜신 설＞ |  |
|  |  |
|  |  |
|  |  |
|  |  |
|  |  |
|  |  |
|  |  |


| 현 헹 | 개 정 안 |
| :---: | :---: |
|  | 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 |
|  | 정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중 |
|  | 계약 |
|  | 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
|  | 보호에 관한 법률」제24조제10항 |
|  | 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 |
|  | 제 계약 |
| （2）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  |
|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 • 신체상 | 학습자에 게 |
| 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 －－－－－－－－－－－－－－－－－－－－－－－배상 |
|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 （3）학원설립－운영자 둥은 「교육 | （3）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
| 기본법」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하여 | －－제12조에 따라 |
|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 － |
|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 |  |
| 하여야 한다． | －－－－－－－ |
| （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등 | （4）제3항에 따라 |
| 에서 교습 또는 기타 목적을 이유 | －－－－－－－－－－－－－－그 밖의 |
| 로 학습자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  |
|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  |
|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 |  |
| 으며，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  |
| 교습시간을 적정하게 안배하는 등 |  |
| 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 |




| 현 헹 | 개 정 안 |
| :---: | :---: |
| 에는 85제곱미터)이하로 하되, 1제 |  |
| 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인 이하가 | - 1명 |
| 되도록 할 것. 다만, 교습의 편의 | - 하여야 한다. |
| 를 위하여 푈요한 경우에는 칸막 | 편의 에 |
| 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사용하되, 최소 10 |
|  | 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
|  | 한다. |
| 2. 열람실 : 열람실은 60제곱미터 | (3) 열람실은 45 |
| 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 |  |
| 인원이 0.8 인 이하가 되도록 하고, | ---- 0.8명 |
|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 |  |
| 할 것. 다만, 남녀별 좌석 구분 또 | 배열하여야 한다. |
| 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 | -- 편의 에 |
| 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 |  |
| 할 수 있다. |  |
| 3. 실험•실습실 : 실험 • 실 습실의 | (4) 실험•실 습실 은 단위면적이 35제 |
| 단위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일 | 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
| 것. 다만,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 ------ 편의에 |
|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 4. 급수시설 및 화장실 : 급수시설 | (3) 급수시설은 |
| 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 |  |
| 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 |  |
| 법」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 | --- 제5조제3항에 따른 |
| 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화장 |  |


| 현 헹 | 개 정 안 |
| :---: | :---: |
| 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4 와 같다． |  |
| ⿹．．（생 략） | （6）（현행과 같음） |
| 6．방음시설 및 소방시설：「소음． | （7）방음시설 및 소방시설은 「소 |
| 진동규제법 의 규정에 의한 생활 | 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 |
| 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 | 관리기준에 |
| 과 소방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 | －－소방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
| 을 갖추어야 한다． |  |
| 제2조의 4（교습과정별 시설기준）（1） | 제2조의 4 （교습과정 별 시설기준） |
| 법 제8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 | 법 제8조에 따른 |
| 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 1 과 같다． |  |
| （2）제2조의 2 제 1 항제 1 호 단서의 규 | （2）제2조의 2 제 1 항제 1 호에 따라 |
| 정에 의하여 강의실을 따로 두지 |  |
| 아니할 수 있는 교습과정을 교습하 |  |
| 는 학원은 원칙상 이론 강의가 실 |  |
| 험 • 실습 • 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  |
| 운영되는 학원을 말한다． |  |
| （3）제 2 조의 2 제 1 항 제 2 호의 규정에 | （3）제 2 조의 2 제 1 항 제 2 호에 따른 실 |
| 의한 실험 • 실습 • 실기 둥을 요하 | 험 • 실습•실기 둥이 필요한－－－－ |
| 는 학원의 시설 • 설비 및 교구기 |  |
| 준은 별표 2와 같다．다만，별표 |  |
| 2 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교습과정 | －－정하지 아니한 교습과정은 교 |
| 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 육장이 신청자가 제출한 설비와 |





| 현 헹 | 개 정 안 |
| :---: | :---: |
|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 (3)제 2 항에 의한 심의위원회는 교 | <삭 제> |
| 육감 소속하에 두며, 심의 위원회의 |  |
| 구성 - 운영 둥 서부사항에 대하여 |  |
| 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
| 제3조(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 제3조(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
| 인 원) (1)영 제 10 조제3항의 규정에 | 인 원) (1)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
| 의한 실험 • 실습•실기 둥을 요하 | 실험 • 실습 • 실기 둥이 필요한 -- |
| 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 |  |
| 력 인원은 별표 2의 시설 • 설비 및 |  |
| 교구기준에 따라 강의실과 실습실 |  |
| 의 일시수용능력 인원수를 각각 합 |  |
| 한 인원으로 한다. 단, 실습실 일시 |  |
| 수용능력 인원수는 1.5제곱미터당 |  |
| 1 명 이하로 하되, 자동차 교습과정 |  |
| 중 중기운전의 운전실습장은 30제 |  |
| 곱미터당 1명 이하, 음악교습과정 |  |
| 중 피아노실 습실은 3제곱미터당 1 |  |
| 명 이하로 한다. | ------------- |
| (2) (생 략) | (2) (현행과 같믐) |
| 제4조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 | 제 4 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 |
| 시간) (1) (생 략) | 시간) (1) (현행과 같음) |
| <신 설 > | (2) 제1항의 독서실 이용금지 시간 |




제 12 조 (시헹규칙)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 밖에 로 정한다.
-------

## 관 계 법 령 발 췌

## $\square$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하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1) 학원설립•운영자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 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평생교 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2) 교습자와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할 때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 공, 적정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희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 다.
(3)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 여 학원•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제 8 조(시설기준)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 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6 조(지도•감독 등) (1)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 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 독을 하여야 한다.
(2)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

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 어야 한다.
(3)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 시설•설비, 교습비등,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설비, 장부, 그 밖 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설비의 개선명령이나 그 밖에 필 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4)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 각종 신고 사항을 확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제3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 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6) 교육감은 미등록•미신고 교습, 교습비등 초과 징수,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그 소속으로 불법사교육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헹정처분) (1)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 달하게 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開院)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 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6.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

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7. 제 15 조제 4 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8. 제 15 조제 6 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9.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 다. 다만, 제 1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 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3. 제 15 조제 4 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4. 제 15 조제 6 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 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7.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8. 제 14 조의 2 제 6 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9. 제 15 조제 5 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제19조(학원 둥에 대한 조치) (1) 교육감은 제6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등 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거나 제17조 에 따라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소 폐지의 처분을 받거나 교습의 정지 처분을 받은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

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학원이나 교습소를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 지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 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2.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시설이거나 제 17 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2) 삭제 <2008.3.28>
(3)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 위에서 하여야 한다.
(4)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 위탁) (1)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삭제
(3) 교육감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계 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square$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 (1)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습행위를 말한다.1.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2.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3.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2）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교육과학기술 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칙（院則）및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5＞

1．학원설립•운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학원의 명칭과 위치
3．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4．정원
5．강사명단
6．교습비등
7．시설과 설비
8．개강 예정 연월일
（3）제2항의 원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10．25＞

1．학원의 명칭 및 설립목적과 위치에 관한 사항
2．수강자의 교습과정별 정원에 관한 사항
3．교습과정 및 교습일시에 관한 사항
4．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
6．교습비등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4）교습과정이 이론 교습과목과 실험•실습 또는 실기 교습과목으로 구성 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개정 2011．10．25＞ （5）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의 내용이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5＞
（6）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신청을 수리하는 경우에 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 10 조(일시 수용능력 초과 교습의 금지 등) (1) 학원설립•운영자는 같은 시간에 해당 시설의 일시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교습을 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0.25>
(2) 삭제 <1999.5.10>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습 또는 실기 교습이 필요한 학원에서 같 은 교습과목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 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 12 조(강사)

(1) 학원설립•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 한 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2) 법 제 13 조제 1 항에 따른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 제20조(견한의 위임•위탁)

(1) 교육감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표육장에게 위 입한다.

1. 법 제5조제 3 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수리
3. 법 제7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등록의 수리 및 조건부등 록의 말소
4. 법 제 10 조에 따른 휴원 및 폐원에 관한 신고의 수리
5.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 셜립•운영에 관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6. 법 제 14 조제 7 항에 따른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에 관한 신고의 수리
7. 법 제 14 조의 2 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의 신고의 수리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변경신고의 수리 등
8. 법 제 14 조의 2 제 6 항 및 제 15 조제 6 항에 따른 교습비등에 대한 조정명령
9. 법 제 16 조제 1 항•제 3 항 및 제 4 항에 따른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 습자에 대한 지도•감독
10. 법 제 16 조제 6 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1. 법 제 17 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12. 법 제 19 조제 1 항에 따른 학원 또는 교습소의 폐쇄 등을 위한 조치
13. 법 제 20 조에 따른 청문
14. 법 제 23 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15.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통보의 접수
16. 제 17 조제 3 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
17. 제 17 조의 2 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기준 설정과 조정명령
(2) 삭제 <2001.6.29>
(3) 교육감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학원설립•운 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연구 등의 업무의 일부 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 탁한다. 다만, 연수를 위탁할 경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 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0.25>

## $\square$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 조(춰업자의 해임요구 등) (1) 제 45 조제 1 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제 44 조제 1 항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 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 45 조제 1 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 44 조제 1 항을 위반하 여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3) 제 45 조제 1 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교 육기관 등의 장이 제2항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 개

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게 대상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 구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폐쇄 및 등록•허가의 취소요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4 조(과태료) (1)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 46 조에 따른 해 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 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44조제3항에 따라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 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 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 22 조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 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 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4)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과태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 한다.

## $\square$ 식품위생법

제 88 조(집단급식소) (1)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렁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개정 2010.1.18>
(2)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관리 등 급 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1.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2.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 인분 분량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 시간 이상 보관할 것
3.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4.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하

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를 것
5. 그 밖에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3) 집단급식소에 관하여는 제 3 조부터 제 6 조까지, 제 7 조제 4 항, 제 8 조, 제9조 제 4 항, 제 10 조제 2 항, 제 22 조, 제 40 조, 제 41 조, 제 48 조, 제 71 조, 제 72 조 및 제 74 조를 준용한다.
(4)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 $\square$ 먹는물관리 법

제 5 조(먹는물의 수질 관리) (1) 환경부장관은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정하여 보급하는 등 먹는물의 수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 다.
(2)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 지사"라 한다)는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먹는물의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는 환경부렁으로 정한다.
(4)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먹는물의 수질 개 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제3항에 따른 수질 기 준 및 검사 횟수를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3.22> (3) 시•도지사는 제 4 항에 따라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가 설정•변경된 경 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square$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검사대상기관）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9．7，2000．1．28，2001．3．28，2003．10．4，2007．8．3，2010．5．17＞
1．「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증권 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3．삭제＜2007．8．3＞
4．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5．삭제＜2007．8．3＞
6．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7．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8．삭제＜2007．8．3＞
9．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10．삭제＜2007．8．3＞
11．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희의 신용사업부문
12．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13．삭제＜1999．9．7＞
14．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5．기타 금융업 및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square$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4 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1）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이하＂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다만，제 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소 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5．3．31＞

1．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계약
2．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제 10 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2）통신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 비자가 제 13 조제 2 항제 10 호의 규정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 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한 경우에는 소비자 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 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05．3．31＞
（3）제2항의 규정은 소비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 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5．3．31＞
1． 10 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재화등 을 구매하는 거래
2．「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로 재화등
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3．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되거나 제 13 조제 2 항제 10 호의 규정에 따른 제 3 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4．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5．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등의 체결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곤란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4）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 약등의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5．3．31＞
（3）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이 법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보 상이나 제 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수단 발행자의 신뢰성 확보에 적절 한 수준이어야 한다．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6）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의하여 소비자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는 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5．3．31＞ （7）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등을 체결하기 위하여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5．3．31＞
（8）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는 사업자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나，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는 전단의 규정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5．3．31＞ （9）제8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에 간하여 이 를 준용한다．＜신설 2005．3．31＞
（10）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 비자보호를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이 경우 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35 조의 규정을 준용하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중＂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는＂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 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로，＂제34조제1항제3호＂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 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로 보고，동조제9항 및 제10항 중 ＂이 법＂은 각각＂「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본다．

